|  |
| --- |
|  |
| 솔모로 컨트리클럽 회칙 |
|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솔모로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칭한다) 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SOLMORO COUNTRY CLUB󰡓으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한일레저(이하󰡒회사󰡓라 칭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클럽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솔모로그린길 171에 클럽하우스 안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 가족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한다.

**제 5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클럽 및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 대표이사가

추대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국외거주

외국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법인회원은 입회시 기명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가족회원)**

정회원(개인, 법인)이 지명하는 등록인으로서(개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

소속임직원 및 직계가족)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 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으

므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회원증 발급 전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는 회원입회절차 수속기간이 완료되어

회원 번호가 부여되고 대금 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급일 익일부터 회원 요금을

적용한다.

**제 10 조 (입회예치금)**

입회예치금은 정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무이자로 10년간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회사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그

반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음.

**제 11 조 ( 입회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입회는 제한할 수 있다.

1. 만 30세 미만자

2. 입회금 미완납자

3. 아래와 같이 사회 통념상 부적격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4) 당사에 현재 또는 과거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를 진행한 자

**제 12 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시 회사가 정한 제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 13 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대회 또는 행사의 실시, 골프장의 유지 보수 등

사전 고지를 하였을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제 14 조 (자격의 제한)**

회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다음의 행위로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1) 경기보조자(캐디) 및 직원에 대한 거친 언어표현, 막말, 성희롱 등

좋지 않은 매너를 행하는 행위

2) 도박성의 과도한 금액의 내기골프 행위

3) 기물파손 등으로 골프장의 재산손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2.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변동등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히

하였을 경우

4. 클럽 입회자격 또는 조건을 허위로 기술하여 입회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요구한 경우

6.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7.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폭행 및 협박,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회원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제 15 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증서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 16 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사는 회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명의개서나 등재자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1) 기존 양도인 미납금이 확인된 경우

2) 회원 자격요건에 제11조 당사 입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정부기관 혹은 수사기관의 요청

4) 기존회원에서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2. 회원권의 양도,법인회원 및 지명인 변경 등의 경우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

경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회원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승계)**

1. 회원의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제16조에 준하여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 주회원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때에는 존속법인이 제1조에 준하여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 18 조 (퇴회)**

1.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된 회원은 회사에 퇴회 신청서와 회원증 및 제반 서류

제출 후 퇴회할 수 있음

2. 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금을 반환함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9 조 (회원관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주최하는 각종경기 및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이용약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등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으며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한다.

**제 6 장 경기규칙**

**제 22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3 조 (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할 규칙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관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의 개폐는 회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이 회칙은 2006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22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